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환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67
----------	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8월 29일

발 의 자: 박환희, 강석주, 경기문,
곽향기, 김경훈, 김동욱,
김영옥, 김용일, 김원중,
김재진, 김춘곤, 김형재,
김혜영, 남창진, 문성호,
민병주, 박영한, 박철성,
봉양순, 서상열, 서준오,
서호연, 송경택, 심미경,
유정인, 윤기섭, 이경숙,
이영실, 이종태, 임만균,
최민규, 최유희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34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가 운영 중인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시민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료 기증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 등 기증자 예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자료 기증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구체화(안 제4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“(자료 기증)”을“(자료 기증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)”로 하고,

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교부하고, 시장이나 박물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할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3항에 따른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제2항 중 “개별 박물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”를 “관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자료 기증)</p> <p>①~② (생 략)</p> <p>③ <u>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. 다만,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6조 ① (생 략)</p> <p>② 실무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<u>개별 박물관장(이하 "관장"이라 한다)</u> 또는 건립 추진 중인 부서의 장(이하 "부서장"이라 한다)으로 한다.</p> <p>③~⑥ (생 략)</p>	<p>제4조(자료 기증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교부하고, 시장이나 박물관장(이하 "관장"이라 한다)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할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제3항에 따른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관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~⑥ (현행과 같음)</p>